

『중국, 국가표준(GB) '소비재 사용설명 제3부: 화장품 일반 표시사항' 개정안』

2026. 05. 11.

TBT 통보여부	통보	HS Code	3303, 3304, 3305, 330710, 330720, 330730, 330790, 340130
통보국	중국	전년도 수출액 (천불)	2,015,598
작성기관	KOTITI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중국 정부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이후,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함에 따라 최신 관리체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 (적용범위) HS 코드* - 3303, 3304, 3305, 330710, 330720, 330730, 330790, 340130

* 본 보고서 2p '적용대상' 참조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본 개정에 따라 어린이 화장품, 소용량 화장품, 전자 라벨,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 등 신규 관리대상이 반영되고, 소비자 안전 확보 및 표시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됨
- (인증정보) NMPA에 제품 비안(신고)·등록 후, 수출·판매 가능
 - (인증절차) 중국 내 책임회사 지정 → 제품 처방·성분 적합성 확인 → 제품시험 →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 기술심사 → 라벨 검토 → NMPA 시스템 등록 / 등록증 발급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EU) 화장품 규정에 따라 책임자 지정, 안전성 평가, 제품정보파일, CPNP 신고, 성분·라벨 표시, 금지·제한성분 등을 관리
 - (미국) FD&C Act, MoCRA에 따라 제조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이상사례 보고, 라벨 표시 등을 관리
 -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등법(PMD Act)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전성분 표시, 표시·광고 제한, 안전성 확보 등을 관리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화장품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라벨 검토·번역·패키지 변경 및 비안·등록 대응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①NMPA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지속 모니터링, ②중국 화장품 라벨·성분·효능표시 관리체계 사전 정비, ③수입·어린이·소용량 화장품 및 전자라벨 적용에 대한 중국 기준 적합성 및 비안·등록 대응 역량 강화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라벨링 및 비안·등록 대응 부담) 제품 중국어 라벨, 전성분 표시, 사용기한, 안전경고문구 및 어린이 화장품 표지 등 강화된 표시 요건 대응으로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음
- (안전성 평가 및 효능관리 부담) 제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효능 입증 자료 및 성분 적합성 검토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시험자료 확보, 성분 검증 및 효능표현 관리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포장·전자라벨 준수 부담) 전자라벨, 소용량 화장품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 등 신규 표시체계 도입에 따라 포장재 변경 및 시스템 구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비안 및 라벨 관련 대응 부담 최소화
 - (중견기업) 안전성·라벨 관리체계 구축 및 내부 절차 마련
 - (대기업) 글로벌 규제 통합 대응 체계 운영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3
III. 관련 인증 정보	8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1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1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12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3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3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4
VI. 대응 방안	15
참고 1 참고자료	16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17
참고 3 규제원문(부속서) 번역본	29

요 약 문

규 제 명	영문	National Standard of the P.R.C., Instructions for use of consumer interest-Part 3: General labelling for cosmetics		
	국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소비자 이익을 위한 사용 지침 — 제3부: 화장품 일반 표시		
WTO/TBT 통보문 번호	G/TBT/N/CHN/2247	통보국	중국	
채택(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현황	개정 초안	
시행(예정)일	승인 후 12개월	통보일(고시일)	2026.04.13.	
HS Code	3303, 3304, 3305, 330710, 330720, 330730, 330790, 340130	의견수렴 마감일	2026.06.12.	
총 수출액 (천불)	11,405,884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2,015,598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규제국;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국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정부가「화장품 감독관리조례」시행 이후,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함에 따라 최신 관리체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개정에 따라 어린이 화장품, 소용량 화장품, 전자라벨,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 등 신규 관리대상이 반영되고, 소비자 안전 확보 및 표시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됨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규제는 중국 내 판매되는 화장품의 라벨 표시기준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제조·수출업체는 본 표준에 따른 강화된 표시 요구사항(수입, 어린이, 소용량, 전자라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품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라벨 검토·번역·패키지 변경 및 비안·등록 대응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음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NMPA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지속 모니터링, ②중국 화장품 라벨·성분·효능표시 관리체계 사전 정비, ③수입·어린이·소용량 화장품 및 전자라벨 적용에 대한 중국 기준 적합성 및 비안·등록 대응 역량 강화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중국 정부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시행 이후,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함에 따라 최신 관리체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 규제 요지

- 본 개정에 따라 어린이 화장품, 소용량 화장품, 전자라벨,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 등 신규 관리대상이 반영되고, 소비자 안전 확보 및 표시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됨

□ 적용대상

- (HS 코드) 아래 표 참조

HS 코드	품명
3303	향수와 화장수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5	두발용 제품류
330710	면도용 제품류
33072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307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30790	기타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시행일

- 승인 후 12개월*

* WTO TBT 통보문 상 시행일은 '승인 후 12개월'로 명시

2

규제 세부 내용

□ 주요 개정사항

- 화장품 명칭, 성분표, 사용기한, 안전 경고 문구 등 필수 표시사항 및 표기 방법 세분화
-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 기준 신설 및 원산지 표시 요구 강화
- 어린이 화장품 전용 표시 의무화
- 소용량 화장품의 최소 표시사항 기준 마련
- 제품 성분 표시체계 강화(전성분 표시, 미량성분·착색제·추진제 표시 기준 등)
- QR코드 기반 전자라벨(E-labelling) 제도 도입 및 표시 요건 마련
- 안전 경고 문구 및 사용 방법 표시 의무 확대
- 제품 사용기한 표시방식 구체화(제조일자·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 등)

□ 세부내용

- 라벨 형식
 - 화장품의 포장 형태, 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식을 선택해야 함
 - ① 화장품 판매 포장에 인쇄 또는 부착
 - ② 판매 포장 외부에 연결된 소책자, 종이띠 또는 카드에 인쇄
 - ③ 판매 포장 내부에 넣는 설명서에 인쇄
 - ④ 전자 라벨
- 기본 원칙
 - 라벨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제품 안전 및 효능 주장은 제품 등록·신고 자료와 일치해야 함
 - 라벨 표시 내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표준 등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 라벨은 인쇄가 벗겨지거나 부착 불량 등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라벨 문자는 선명하고 지속성 있으며 읽기 쉬워야 함
- 라벨에 사용되는 문자는 표준 중국 한자를 사용해야 함(외국어 사용 가능하며, 표준 중국 한자로 대응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
- 다음 내용은 화장품 라벨에서 사용이 금지됨
 - ① 의학적 효능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② 허위 또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 ③ 사회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④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표시를 금지한 내용

○ 표시 요구사항

항목	요구사항
중국어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중국어 명칭은 포장 가시면 중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 1곳에서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함 * 产品名称(제품명), 产品中文名称(제품 중국어 명칭), 品名(품명) 등 - 포장 상자가 있는 제품의 경우, 포장 용기에도 화장품 중국어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 화장품 중국어 명칭은 일반적으로 상표명, 통용명, 속성명으로 구분됨 • 상표명, 통용명 및 속성명이 동일한 시리즈 제품은 속성명 뒤에 추가 표시*가 필요한 내용을 표기해야 함 * 색상 번호, 향, 자외선 차단지수, 적용 피부(모발) 유형, 특정 대상 등
등록인·신고인·제조기업의 명칭 및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함 (해외 화장품은 중국어로 표기하지 않아도 됨) • 화장품 등록인/신고인이 해외 기업인 경우, 중국 내 책임자의 명칭 및 주소를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함 • 제조기업의 주소는 내용물과 접촉하는 마지막 공정을 수행한 실제 생산 주소로 표기해야 함 • 중국 내 생산기업의 화장품 생산허가번호는 라벨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함 • 마지막 공정을 수행한 제조기업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정보를 동시 표기 가능하며, 코드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실제 제조기업을 식별해야 함
성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는 화장품의 전체 성분 명칭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하며, "成分(성분)"이라는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함 • 성분표의 각 성분 명칭은 ", " 기호로 구분해야 함 • 성분 명칭 표시 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첨가량이 많은 순, 성분 함량 계산은 제품 등록신고자료와 일치해야 함

항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성분 첨가량이 1% 이하인 경우, 1% 초과 성분 뒤 임의 배열 가능 ㉟ 0.1% 이하의 모든 성분은 "기타 미량 성분"이라는 안내 문구로 표시해야 함 ㊱ 다색상 화장품의 경우, 착색제 표시 시 성분표 끝에 "포함될 수 있는 착색제"의 안내 문구 삽입이 가능하며, 임의 순서로 배열 가능 ㊲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추진제는 "추진제"라는 안내 문구로 표시하여 성분표 마지막에 기재해야 함 • 성분 명칭 표시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기재된 표준 중국어 원료 명칭을 사용해야 함 - 신규 원료 성분은 해당 신규 원료 등록신고 시의 중국어 명칭과 일치해야 함 - 향료는 각 성분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성분표에 "향료" 또는 "(일상용) 향료"로 표기 가능 - 성분 명칭에 라틴어 학명이 포함된 경우, 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됨 •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2가지 이상 제형의 화장품은 각각 별도의 성분표를 표시해야 함 • 두 개 이상의 독립 포장을 포함하고 각각 단독 사용이 가능한 화장품은 각각 별도로 성분표를 표시해야 함
순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함량 표시는 「정량 포장 상품 계량 감독관리 방법」에 따름 • 순함량은 화장품 판매 포장의 진열면에 표시해야 함 • 순함량은 질량 또는 부피 등 국가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함 (불가피한 경우, 기타 법정 계수 단위 사용이 가능함)
사용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또는 "생산 배치번호 및 사용기한" 중 하나를 포장 가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함 • 포장 상자가 있는 제품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포장 용기에 동시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는 생략 가능함 * ① 제조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② 생산 배치번호 및 사용기한 ③ 생산 배치번호 및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기한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일자) YYYYMMDD • (품질보증기간) "보증기간: x년" 또는 "보증기간: xx개월" • (생산 배치번호) 화장품 등록인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정함 • (사용기한) YYYYMMDD 또는 YYYYMM • (개봉 후 사용기간) 부록 A 양식 활용(xx月: 개봉 후 xx개월 이내 사용)
다수의 독립 포장 제품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포장 용기마다 각각 제품 사용기한을 별도로 표시해야 함 •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는 가장 먼저 만료되는 사용기한보다 늦지 않은 기한을 표시해야 함
표준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시면에는 제품 생산 시 적용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단체표준 또는 기업 표준의 제품 표준번호를 표시해야 함 • 제품 표준번호에는 연도 표기를 생략할 수 있음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화장품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를 표시해야 함
안전 경고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경고 표시가 필요한 화장품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안전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함

항목	요구사항
사용방법 안내 또는 사용 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방법 표시가 필요한 화장품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 또는 설명서에 사용방법 안내 또는 사용 가이드 도식을 표시해야 함
보관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보관 조건이 필요한 화장품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보관 요구사항을 표시해야 함

○ 기타 제품 표시 요구사항

항목	요구사항
수입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화장품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함 • 표시 요구사항 외 다음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충족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명확한 화장품 중국어 명칭이 있어야 함 ② 해외 제조기업의 명칭 및 주소 정보는 중국어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③ 화장품 생산허가번호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④ 법규 요구사항의 차이로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의 성분표와 원문 성분표 사이에 성분 수, 대응 명칭 및 표시 순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⑤ 원산국 또는 지역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의 판단 기준에 따르며,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 및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함 ⑥ 제품 표준번호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소용량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문서의 표시 요구사항 및 수입 화장품 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는 제품의 중국어 명칭, 특수 화장품 등록번호, 등록인/신고인 명칭, 순함량,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함 •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소포장에는 화장품 중국어 명칭 및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함
어린이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문서의 표시 요구사항 및 수입 화장품 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어린이 화장품 표지 발표에 관한 공고」에 따른 어린이 화장품 표지를 표시해야 함 • 안전 경고 문구에 “성인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함”을 표시해야 함 • 클렌징 또는 미용 장식 효능을 표방하는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안전 경고 문구에 “즉시 세척하십시오”,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등 유사 내용을 표시해야 함 •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사용방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 “먼저 손바닥에 분사한 후 얼굴에 바르십시오” - “흡입을 피하십시오” 등 • “식품급”, “섭취 가능” 등의 표현을 표시해서는 안 됨 • 자외선 차단 제품은 소비자의 과도한 햇빛 노출을 유도하거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전자 라벨

- 화장품 등록인/신고인은 화장품 라벨이 본 문서 요구사항과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전자 라벨을 통해 라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전자 라벨은 제품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다른 정보용 QR코드와 혼동되지 않아야 함
- 전자 라벨을 사용하는 화장품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최소한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함

연번	전자 라벨 사용 시, 최소 필요 표시사항
1	제품 중국어 명칭
2	등록인 또는 신고인의 명칭
3	순함량
4	사용기한
5	안전 경고 문구
6	(특수 화장품의 경우)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
7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어린이 화장품 표지

-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 규범성 문서 및 기술 규범에 기타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함

□ 인증(비안/등록) 절차

○ 제품 유형 검토

- (일반 화장품) 비안(备案, 신고) 대상
- (특수 화장품) 주처(注册, 등록·허가) 대상

○ 중국 내 책임회사 지정

- 해외 기업은 중국 법인 또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대리인은 비안, 자료 제출, 리콜 및 규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

○ 제품 처방 및 성분 적합성 확인

- 화장품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기준 검토
- 어린이 또는 특수 화장품 수출 시, 별도 적용되는 기준 검토

○ 제품시험

- 중국 NMPA 인정된 시험기관, 해외 MRA 시험기관 등에 신청
- 미생물, 안정성, 독성, 유해물질 등 요구되는 시험 실시
- 특수 화장품은 효능성 입증시험이 요구됨

○ 안전성 평가 보고서(일반 화장품) / 기술심사(특수 화장품)

- (일반 화장품) 원료 안전성, 노출평가, 독성자료, 위해평가, 포장재 적합성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 (특수 화장품) NMPA 또는 지정기관에 의해 처방 적정성, 안전성, 효능 근거, 시험자료 등에 관한 기술 심사를 진행

○ 중국어 라벨(표시사항) 검토

- 본 문서에 명시된 표시사항 내용 준수(제품명, 등록인/신고인/제조기업 명칭·주소, 전 성분, 순함량, 사용기한 등)
- 수입용 화장품, 소용량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에 해당하는 표시사항

○ NMPA 시스템 등록(일반 화장품) / 등록증 발급(특수 화장품)

- (일반 화장품) NMPA 플랫폼을 통해 제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특수 화장품) 심사 통과 시,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 발급

□ 비안 시 필요 서류

연번	필요 서류
1	비안인(신고인) 및 관련 정보 자료
2	제품 명칭 자료
3	제품 처방(전 성분)
4	제품 실시 표준(제품 규격서)
5	제품 라벨 샘플
6	제품 시험(검사) 보고서
7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8	(해당 시) 위탁생산 관련 증빙자료
9	(수입 제품 시) 자유판매증명서(CFS) 등 해외 시판 증빙자료
10	(해당 시) 효능 주장 평가 자료
11	(해당 시) 제품 샘플

□ 등록 시 필요 서류

- 제품 유형(UV 차단, 미백, 탈모완화 등)에 따라 효능 입증에 관한 추가 서류가 요구됨
- 단순 효능 입증자료가 아닌 실제 효능을 입증한 시험자료 중심으로 요구됨

□ 사후관리

- NMPA 및 관계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시장 샘플링 검사, 라벨·광고 점검, 부적합 제품 리콜 명령, 비안 취소 및 행정처분 등을 수행함

□ 표시사항

- 본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참조

□ 신청 시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 5년(특수화장품 등록에 한함)
 - 일반화장품(비안)은 제품 처방, 제조업체, 라벨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변경 비안 또는 관련 유지관리(자료 갱신) 필요
- (자료 보관) 제품 안전성 평가자료, 시험보고서 및 비안/등록 관련 자료를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함
- (광고·표시 관리) 효능 과장, 식품·의약품 오인 표현, “식품급·먹을 수 있음” 등의 표시 사용 금지
- (위반 시 제재)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 판매중지, 비안/등록 취소,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EU

- (현행 규정) 화장품 규정¹⁾에 따라 화장품의 책임자 지정, 안전성 평가, 제품정보파일(PIF), CPNP 신고, 성분·라벨 표시, 금지·제한성분 관리를 적용 중이며, 화장품 라벨은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수단으로 관리
- (도입동향) 최근 화장품 성분 안전성 및 표시 투명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확대, CMR 물질 및 제한성분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규제 개정 논의가 진행 중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어린이용 화장품, 자외선차단제, 고위험 성분 함유 제품 등은 안전성 평가·효능표현·라벨링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

2

미국

- (현행 규정) FD&C Act²⁾ 및 MoCRA³⁾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제조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이상사례 보고, 라벨 표시 및 책임자 정보 관리 등을 요구
- (도입동향) 최근 PFAS·중금속·불순물 등 소비자 안전 이슈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어린이용 제품 안전성 및 표시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미백·민감성 완화 등 기능성 구강관리제품 시장 확대에 따라 효능표현 검증, 안전성 자료 확보 및 광고·라벨링 관리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

1) Regulation (EC) No 1223/2009

2)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3)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 (현행 규정) 의약품의료기기등법(PMD Act)에 따라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전성분 표시, 표시·광고 제한,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GQP/GVP) 요구사항 등을 적용 중
- (도입동향) 최근 화장품 안전성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중심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보존제·착색제 등 제한성분 관리와 표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능성 표현 및 온라인 표시 관리도 확대 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어린이용 화장품, 자외선차단제,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해 안전성·효능표시·경고문구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중국	EU	미국	일본
주요법령	화장품감독관리조례 (CSAR)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FD&C Act, MoCRA	의약품의료기기등법 (PMD Act)
소관부처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유럽집행위원회(EC) 및 회원국 감독기관	식품의약국(FDA)	후생노동성(MHLW)
제품분류	일반화장품, 특수화장품	화장품 (단일체계)	화장품·OTC(일부 기능성)	화장품·의약외품
사전절차	비안·등록	CPNP 신고	시설등록·제품리스트	제조판매업 허가
책임자 제도	중국 내 책임자 의무	Responsible Person (RP) 의무	Responsible Person 개념 도입	제조판매업자 책임
안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보고서 의무 강화	CPSR 의무	안전성 입증 책임 강화	안전성·품질관리 요구
성분규제	IECIC 기반 원료관리	Annex II~VI 금지·제한성분	금지성분 제한적, 사후규제 강화	배합금지·제한성분 운영
라벨규제	중국어 라벨, 전성분, 전자라벨 강화	전성분·알레르기 성분 표시	경고문구·책임자 정보 강화	전성분·광고표시 제한
어린이 화장품	전용 표지·경고문구 의무	어린이 안전성 중심 관리	어린이 안전성·흡입위험 검토	저자극·안전관리 중심
효능표현	효능 입증자료 요구 강화	과장광고·오인표시 제한	기능성 표현 FDA 관리 강화	의약적 표현 엄격 제한
전자라벨	QR 기반 전자라벨 도입	디지털 정보 제공 확대 논의	전자정보·온라인 표시 확대	온라인 표시관리 강화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National Standard of the P.R.C., Instructions for use of consumer interest-Part 3: General labelling for cosmetics
관리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법적근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주요목적	최신 관리체계 반영 및 시장환경 변화 대응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수입 화장품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 의무화 및 원산국·중국 내 책임자 정보 표시 요구
어린이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 전용 표지 사용, "성인 감독 하 사용" 경고문구 및 안전표시 의무화
소용량 화장품	소용량 화장품의 최소 필수 표시사항 및 설명서·전자라벨 활용 기준 준수
전자라벨 도입	QR코드 기반 전자라벨(E-labelling) 허용 및 최소 표시항목 규정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 최신 화장품 감독관리 체계를 반영한 개정에 해당함
비차별성	수입 화장품에 대한 중국어 라벨 및 중국 내 책임자 표시가 요구되나,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음
최소무역제한성	국제 화장품 라벨링 및 안전관리 강화 추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
투명성	WTO TBT 통보 및 30일 코멘트 의견수렴 기간 시행

○ 결론 및 권고 사항

- (준수사항) 본 규제는 중국 내 판매되는 화장품의 라벨 표시기준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제조·수출업체는 본 표준에 따른 강화된 표시 요구사항(수입, 어린이, 소용량, 전자라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규제영향) 화장품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라벨 검토·번역·패키지 변경 및 비안·등록 대응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①NMPA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지속 모니터링, ②중국 화장품 라벨·성분·효능표시 관리체계 사전 정비, ③수입·어린이·소용량 화장품 및 전자라벨 적용에 대한 중국 기준 적합성 및 비안·등록 대응 역량 강화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수입 화장품에 대한 추가 표시사항이 요구되나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 되지 않으며,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 없음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 없음

6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비안 및 라벨 관련 대응 부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MPA 화장품 비안 및 GB 라벨 요구사항 사전 검토 - 중국어 라벨, 전성분, 사용기한, 안전경고문구 등 기본 표시사항 점검 - 현지 비안·시험·라벨 대행기관 활용을 통한 대응 부담 최소화
중견 기업	안전성·라벨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안전성 평가 및 성분·효능 표시 검토 체계 구축 - 어린이 화장품·수입 화장품·전자라벨 대상 표시 적합성 검증 강화 - 제품·포장·원료 변경 시 비안·등록 변경관리 절차 마련
대기업	글로벌 규제 통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EU·미국 등 글로벌 화장품 라벨 및 안전규제 통합 관리체계 운영 - 전자라벨·어린이 화장품·효능표시 관련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확대 적용 - NMPA 화장품 감독관리조례(CSAR), GB 국가표준 개정 및 효능평가 제도 동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 참고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국무원령 제416호)
-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국무원령 제727호)
- 「정량 포장 상품 계량 감독관리 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70호)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어린이 화장품 표지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 2021년 제143호)
-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GB 5296.3-202X

대체 5296.3-2008

소비재 사용설명

제3부: 화장품 일반 표시사항

Instructions for use of consumer interest-
Part 3: General labelling for cosmetics

(의견수렴안)

서문

본 문서는 GB/T 1.1—2020 「표준화 업무 지침 제1부분: 표준화 문서의 구조 및 작성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

본 문서는 GB/T 5296 「소비재 사용설명」의 제3부분이다. GB/T 5296은 이미 다음 부분들을 발표하였다:

- 제1부분: 총칙
- 제2부분: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기기
- 제3부분: 화장품 일반 라벨링
- 제4부분: 방직품 및 의류
- 제5부분: 완구
- 제6부분: 가구
- 제7부분: 스포츠용 기구

본 문서는 GB 5296.3—2008 「소비재 사용설명 화장품 일반 라벨」을 대체한다.

본 문서는 GB 5296.3—2008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문서 명칭을 표준화함
- 표준 적용 범위를 변경함
- 규범성 인용 문서를 변경함
- 용어 및 정의를 변경함
- 라벨 형식을 변경함
- 기본 원칙을 변경함
- 화장품 라벨 표시 내용 및 요구사항을 변경함
-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의 추가 표시 요구사항을 신설함
- 소용량 화장품 표시 요구사항을 변경함
- 어린이 화장품 표시 요구사항을 신설함
- 전자 라벨을 추가함

본 문서의 일부 내용은 특허와 관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문서의 발행기관은 관련 특허를 식별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문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제안하고 관할한다.

본 문서는 1987년에 최초 발표되었으며, 1995년에 1차 개정, 2008년에 2차 개정을 거쳤고, 이번이 3차 개정이다.

서론

GB/T 5296 「소비재 사용설명」은 소비재 사용설명 작성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기기, 화장품, 방직품 및 의류, 완구, 가구, 스포츠용 기구 등 제품 유형에 따라 사용 설명의 내용과 작성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된다.

- 제1부분: 총칙. 목적은 소비재 사용설명 작성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는 데 있다.
- 제2부분: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기기. 목적은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기기 사용설명 기본 원칙, 기본 요구사항, 표준 내용 및 표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 제3부분: 화장품 일반 라벨링. 목적은 화장품 판매 포장의 일반 라벨 형식, 기본 원칙, 표시 내용 및 표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 제4부분: 방직품 및 의류. 목적은 방직품 및 의류 사용설명 기본 원칙, 표시 내용 및 표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 제5부분: 완구. 목적은 완구 사용설명 총체적 요구사항, 주요 내용, 형식 및 작성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 제6부분: 가구. 목적은 가구 사용설명 총체적 요구사항, 주요 내용, 형식 및 작성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 제7부분: 스포츠용 기구. 목적은 스포츠용 기구 사용설명 작성 기본 원칙, 표시 내용, 부착 위치와 형식, 글꼴 및 글자 크기를 규정하는 데 있다.

GB/T 5296.1, GB/T 5296.2, GB/T 5296.4, GB/T 5296.5, GB/T 5296.6 및 GB/T 5296.7은 권고성 국가 표준이며, 본 문서는 GB/T 5296.1과 함께 사용된다.

소비재 사용설명 제3부분: 화장품 일반 라벨링

1 범위

본 문서는 화장품 판매 포장 라벨의 형식, 기본 원칙, 표시 내용 및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본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적용되며, 무료 체험, 증정, 교환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화장품도 포함한다.

2 규범성 인용문서

다음 문서의 내용은 본문 내의 규범성 인용을 통해 본 문서의 필수 조항을 구성한다. 날짜가 명시된 인용문서는 해당 날짜의 버전만 본 문서에 적용되며,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인용문서는 최신 버전(모든 개정사항 포함)이 본 문서에 적용된다.

본 문서에는 규범성 인용문서가 없다.

3 용어 및 정의

다음 용어 및 정의는 본 문서에 적용된다.

3.1 화장품 (cosmetics)

도포, 분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사용되며, 세정, 보호, 미화 및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용 화학공업 제품.

3.2 소용량 화장품 (small-sized cosmetics)

판매 포장의 순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화장품.

3.3 어린이 화장품 (children's cosmetics)

만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에게 적용되며, 세정, 보습, 파우더, 자외선 차단 등의 효능을 가진 화장품.

3.4 라벨 (labelling)

화장품 판매 포장에 제품의 기본 정보, 속성 특징 및 안전 경고 등을 식별·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 기호, 숫자, 도안 등의 표시와, 해당 표시 정보가 부착된 포장 용기, 포장 상자 및 설명서.

3.5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 (imported cosmetics Chinese labelling)

수입 화장품 판매 포장에 사용되며, 인쇄 또는 부착 방식으로 표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라벨.

3.6 전자 라벨 (E-labelling)

일정한 전자 저장 메커니즘을 통해 저장된 화장품 라벨 관련 내용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해당 QR코드.

주: 전자 라벨은 편리한 판독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일반적인 통신 또는 결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QR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직접 정보를 읽고 제품 라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3.7 판매 포장 (sales packaging)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

주: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 포장 용기를 담은 포장 상자 및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를 포함한다.

3.8 내용물 (contents)

포장 용기 안에 들어 있는 화장품.

3.9 진열면 (display panels)

화장품이 진열되었을 때 바닥면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모든 면.

3.10 가시면 (visible panels)

판매 포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모든 면.

주: 판매 포장이 다층 포장인 경우, 외포장을 통해 내포장의 내용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다면 내포장도 가시면에 포함된다.

3.11 순함량 (net content)

포장 용기 및 기타 포장 재료를 제외한 화장품 내용물의 양.

3.12 품질보증기간 (shelf life)

화장품 제품 표준 및 라벨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화장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3.13 개봉 후 사용기간 (period after opening)

화장품 제품 표준 및 라벨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화장품 개봉 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주: 품질보증기간이 30개월을 초과하고 포장 상자가 있는 화장품에 한한다.

3.14 안내 문구 (guiding word)

표시 내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구.

3.15 제조기업 (manufacturer)

내용물과 접촉하는 최종 공정을 완료한 기업.

4 라벨의 형식

화장품의 포장 형태 및/또는 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라벨 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 화장품 판매 포장에 인쇄 또는 부착
- 판매 포장 외부에 연결된 소책자, 종이띠 또는 카드에 인쇄
- 판매 포장 내부에 넣는 설명서에 인쇄
- 전자 라벨

5 기본 원칙

5.1 화장품 라벨에 표시되는 내용은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라벨 내용 중 제품 안전 및 효능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제품 등록 또는 신고 자료의 관련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 중 제품 안전 및 효능 주장과 관련된 내용 역시 원래 라벨의 내용과 대응하여 일치해야 한다.

5.2 화장품 라벨에 표시되는 내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 규범성 문서 및 기술 규범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5.3 화장품 라벨에는 인쇄가 벗겨지거나 부착이 불량한 등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벨 문자는 선명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5.4 화장품 라벨의 문자사용 요구사항

- 화장품 라벨에 사용하는 문자는 등록상표, 웹사이트 주소, 아라비아 숫자, 해외 기업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 등을 제외하고는 표준 중국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 본 문서에서 규정한 라벨 내용은 동시에 한어병음, 소수민족 문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한어병음·소수민족 문자·외국어는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하며, 제품 판매 포장의 동일 가시면 내 최소 한 곳 이상에서 표준 중국 한자로 대응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화장품 중국어 라벨에서 등록상표를 제외한 동일 가시면 내 기타 문자 글꼴의 크기는 대응되는 표준 중국 한자 글꼴 크기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5.5 화장품 라벨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내용

- 의학적 효능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허위 또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 사회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표시를 금지한 내용

6 표시 내용 및 요구사항

6.1 화장품 중국어 명칭

6.1.1 표시 위치:

- 화장품 중국어 명칭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 중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 한 곳 이상에서 “产品名称(제품명)”, “产品中文名称(제품 중국어 명칭)”, “品名(품명)” 등의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한다.
- 포장 상자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
 -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도 화장품 중국어 명칭을 동시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는 필요하지 않다.
 -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직접 문자를 표시할 수 없는 화장품(예: 캡슐 형태의 1회용 화장품, 이미 밀봉된 리필 제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에 화장품 중국어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상의 제형으로 구성된 화장품의 경우, 그중 하나의 제형이 동일 시리즈의 여러 제품과 공용될 수 있다면(예: 산화형 염모제의 산화제 크림), 해당 제형의 내용물 접촉 용기에는 화장품 중국어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6.1.2 화장품 중국어 명칭은 일반적으로 상표명, 통용명 및 속성명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 명칭은 통용명 또는 속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6.1.3 상표명, 통용명 및 속성명이 동일한 시리즈 제품은 속성명 뒤에 추가 표시가 필요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색상 번호, 향, 자외선 차단지수, 적용 피부(모발) 유형, 특정 대상자 등이 있다. 또는 속성명 뒤에 해당 추가 표시 내용의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예: "색상 번호는 봉인 스티커 참조".

6.1.4 화장품 중국어 명칭은 화장품의 실제 속성을 반영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안 된다.

6.2 화장품 등록인·신고인·제조기업의 명칭 및 주소

6.2.1 화장품 등록인 또는 신고인의 명칭 및 주소는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한다.

주: 해외 화장품 등록인·신고인의 명칭 및 주소는 중국어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6.2.2 화장품 등록인 또는 신고인이 해외 기업인 경우, 중국 내 책임자의 명칭 및 주소를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한다.

6.2.3 제조기업의 명칭 및 주소는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한다. 제조기업 주소는 내용물과 접촉하는 마지막 공정을 수행한 실제 생산 주소여야 한다.

6.2.4 중국 내 생산기업의 화장품 생산허가번호는 라벨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한다.

6.2.5 내용물과 접촉하는 마지막 공정을 수행한 제조기업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제조기업의 정보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코드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실제 제조기업을 식별해야 한다.

6.2.6 화장품 등록인 또는 신고인이 제조기업과 동일한 경우, "등록인/제조기업" 또는 "신고인/제조기업" 등의 안내 문구를 사용하여 간소화 표기를 할 수 있다.

6.3 화장품 성분표

6.3.1 화장품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는 화장품의 전체 성분 명칭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

주1: 화장품 원료의 품질 보증을 위해 원료에 극미량 첨가되는 향산화제, 방부제, 안정제 등은 화장품 성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주2: 원료 자체에 포함되거나 제조공정상 불가피하게 잔류하는 극미량 불순물은 화장품 성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주3: 제품 생산공정 중 첨가되지만 다른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최종 제품에 작용하지 않으며 후속 생산 단계에서 제거되는 가공보조제(예: 습식 제조 고품 파운데이션 공정 중 첨가되었다가 성형 후 완전히 휘발되는 에탄올)는 화장품 성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주4: 밀봉 포장 내에 첨가되며 개봉 후 사라지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보호가스는 화장품 성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6.3.2 성분표는 "成分(성분)"이라는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한다.

6.3.3 성분표의 각 성분 명칭은 “、” 기호로 구분해야 한다.

6.3.4 성분 명칭 표시 순서

- a) 성분표의 성분 명칭은 첨가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해야 하며, 성분 함량 계산은 제품 등록신고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 b) 성분 첨가량이 1% 이하인 경우, 1%를 초과하는 성분 뒤에 임의 순서로 배열할 수 있다.
- c) 0.1% 이하의 모든 성분은 “기타 미량 성분”이라는 안내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
- d) 다색상 시리즈 화장품의 경우, 착색제를 표시할 때 성분표 끝에 “포함될 수 있는 착색제”라는 안내 문구를 삽입할 수 있으며, 해당 시리즈 전체 제품의 착색제를 임의 순서로 배열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착색제가 실제 표시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 e)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추진제는 “추진제”라는 안내 문구로 표시하여 성분표 마지막에 기재해야 한다.

주: 기타 미량 성분, 포함될 수 있는 착색제, 추진제는 성분표에서 각각 한 번만 표시하면 된다.

6.3.5 성분 명칭 표시 요구사항

- 성분 명칭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기재된 표준 중국어 원료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 신규 원료의 성분 명칭은 해당 신규 원료 등록신고 시의 중국어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 향료의 경우, 향료 내 개별 향료 성분 및 보조 성분은 각각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성분 표에 “향료” 또는 “(일상용)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 성분 명칭에 라틴 학명이 포함된 경우, 라틴어 부분은 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주: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의 동적 조정 메커니즘으로 인해 화장품 성분표의 원료 명칭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화장품 등록인·신고인은 라벨 개정 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6.3.6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상의 제형으로 구성된 화장품은 각각 별도로 성분표를 표시해야 한다.

6.3.7 두 개 이상의 독립 포장을 포함하고 각각 단독 사용이 가능한 화장품은 각각 별도로 성분표를 표시해야 한다. 다색상 시리즈 제품은 6.3.4 d)의 요구사항에 따라 하나의 성분표로 표시할 수 있다.

6.4 순함량

6.4.1 순함량 표시는 「정량 포장 상품 계량 감독관리 방법」에 따른다.

6.4.2 순함량은 화장품 판매 포장의 진열면에 표시해야 한다.

6.4.3 순함량은 질량 또는 부피 등 국가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질량이나 부피로 표시하기 어려운 화장품의 경우에는 기타 법정 계수 단위(예: 매, 장, 개, 쌍 등)를 사용할 수 있다.

6.5 제품 사용기한

6.5.1 제품 사용기한 표시 형식

6.5.1.1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해당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한다.

- 제조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 생산 배치번호 및 사용기한

6.5.1.2 포장 상자가 있는 화장품은 6.5.1.1의 표시 외에도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동시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는 생략할 수 있다.

- 제조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 생산 배치번호 및 사용기한
- 생산 배치번호 및 개봉 후 사용기간

주1: 제조일자, 품질보증기간, 생산 배치번호 및 사용기한 정보는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주2: 캡슐 형태의 1회용 화장품처럼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사용기한을 보관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6.5.2 제품 사용기한 표시 방법

6.5.2.1 제조일자 표시

“생산일자” 또는 “생산일자는 포장 참조” 등의 안내 문구를 사용하며, 날짜는 4자리 연도 + 2자리 월 + 2자리 일 순서로 표시한다.

예: “生产日期 : 20251001” 또는 “생산일자는 포장 참조”와 함께 포장에 “20251001”이 표시된 경우, 해당 제품은 2025년 10월 1일 생산을 의미한다.

6.5.2.2 품질보증기간 표시

“보증기간: x년” 또는 “보증기간: xx개월” 형식으로 표시하며, 연수 및 개월 수는 중국 숫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6.5.2.3 생산 배치번호 표시

“생산 배치번호는 포장 참조” 등의 안내 문구를 사용한다. 생산 배치번호 형식은 화장품 등록인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6.5.2.4 사용기한 표시

“표시된 날짜 이전에 사용하십시오” 또는 “사용기한은 포장 참조” 등의 안내 문구를 사용하며, 생산 배치번호 안내와 통합하여 “생산 배치번호 및 사용기한은 포장 참조” 형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사용기한은 다음 형식 중 하나로 표시한다.

- 4자리 연도 + 2자리 월 + 2자리 일
- 4자리 연도 + 2자리 월

예: “20301005” → 2030년 10월 5일 이전 사용
“203010” → 2030년 10월 1일 이전 사용

6.5.2.5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규정된 아이콘(부록 A 참조)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아이콘 내 “xx月(M)”은 “개봉 후 xx개월 이내

사용"을 의미한다.

예: "3月(M)" → 개봉 후 3개월 이내 사용

6.5.2.6 제품 사용기한의 안내 문구는 통합 표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생산일자 및 품질보증기간은 포장 참조"
"생산 배치번호 및 사용기한은 포장 참조"

6.5.2.7 화장품 제품 사용기한의 안내 문구와 실제 정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찾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6.5.3 다수의 독립 포장을 포함한 화장품의 표시 요구사항

직접 접촉하는 내용물의 포장 용기마다 각각 제품 사용기한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는 가장 먼저 만료되는 독립 포장 화장품의 사용기한보다 늦지 않은 기한을 표시하거나, 또는 모든 독립 포장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6.6 제품 표준번호

6.6.1 가시면에는 제품 생산 시 적용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단체표준 또는 기업표준의 제품 표준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6.2 제품 표준번호에는 연도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6.7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

특수 화장품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8 안전 경고 문구

안전 경고 표시가 필요한 화장품(예: 에어로졸 제품, 에탄올 함량이 높은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가 요구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등)은 화장품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안전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안전 경고 문구는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한다.

6.9 사용방법 안내 또는 사용 가이드 도식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방법 표시가 필요한 화장품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 또는 설명서에 사용방법 안내 또는 사용 가이드 도식을 표시해야 한다.

6.10 보관 요구사항

사용기한 내 화장품 품질 및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보관 조건이 필요한 화장품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보관 요구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7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의 추가 표시 요구사항

7.1 수입 화장품에는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

7.2 본 문서의 “6 표시 내용 및 요구사항” 외에도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명확한 화장품 중국어 명칭이 있어야 한다.
- 해외 제조기업의 명칭 및 주소 정보는 중국어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화장품 생산허가번호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법규 요구사항 차이로 인해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의 성분표와 원문 성분표 사이에 성분 수, 대응 명칭 및 표시 순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 원산 국가 또는 지역 정보는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안내 문구로 표시 내용을 유도해야 한다. 원산 국가 또는 지역 정보의 판단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에 따른다.
- 제품 표준번호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8 소용량 화장품 표시 요구사항

8.1 본 문서의 “6 표시 내용 및 요구사항” 및 “7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의 추가 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8.2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제품 중국어 명칭,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
- 등록인 또는 신고인의 명칭
- 순함량
- 사용기한

8.3 본 문서에서 규정한 기타 표시 필요 사항은 제품 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전자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 라벨 내용에 표시할 수 있다.

8.4 포장 상자가 있는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는 화장품 중국어 명칭과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9 어린이 화장품 표시 요구사항

9.1 본 문서의 “6 표시 내용 및 요구사항” 및 “7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의 추가 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9.2 어린이 화장품 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표지 형식 및 표시 요구사항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어린이 화장품 표지 발표에 관한 공고」에 따른다.

9.3 안전 경고 문구에 “성인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함”을 표시해야 한다.

클렌징(메이크업 제거) 또는 미용 장식 효능을 표방하는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사용 장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안전 경고 문구에 “즉시 세척하십시오”,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등의 유사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9.4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사용방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 “먼저 손바닥에 분사한 후 얼굴에 바르십시오”

— “흡입을 피하십시오” 등 관련 내용

9.5 “식품급”, “섭취 가능” 등의 표현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9.6 자외선 차단 제품은 소비자의 과도한 햇빛 노출을 유도하거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전자 라벨

10.1 화장품 등록인 또는 신고인은 화장품 라벨이 본 문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전자 라벨을 사용하여 화장품 라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0.2 전자 라벨은 제품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다른 정보용 QR코드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포장 상자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도 전자 라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10.3 전자 라벨을 사용하는 화장품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최소한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 요구사항은 본 문서의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제품 중국어 명칭

— 등록인 또는 신고인의 명칭

— 순함량

— 사용기한

— 안전 경고 문구

주: 소용량 화장품은 안전 경고 문구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 특수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어린이 화장품은 어린이 화장품 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10.4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 규범성 문서 및 기술 규범에 기타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참고 3

규제원문(부속서) 번역본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 A
(규범성)
개봉 후 사용기간 아이콘

A.1 개봉 후 사용기간 아이콘은 그림 A.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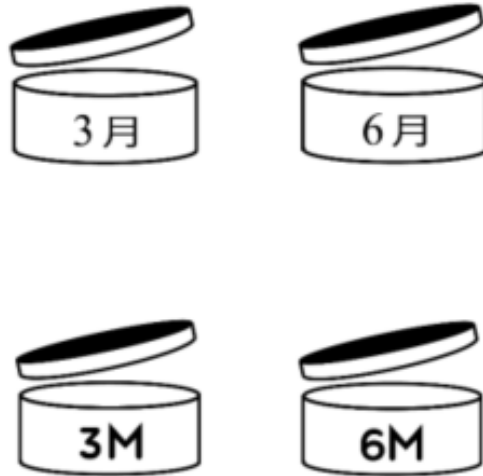


그림 A.1 개봉 후 사용기간 아이콘